## 문화예술교육원 규정

2013. 11. 20 제정 2015. 2. 6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의 조 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직무) 교육원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- 1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」제18조의 규정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 과정의 운영
  - 2.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
  - 3. 교내외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의 교육 및 학술활동과 인적 · 물적 교류
  - 4. 기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제3조(원장)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본교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있다. (개정 2015.2.6.)
  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4조(부원장) ① 교육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  - ②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6.)
  -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교학실장) ① 교육원에 교학실장을 둘 수 있다.
  - ② 교학실장은 원장이 보하며, 문화예술교육원 교학실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6조(연구원 등) 교육원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7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원장·부원장·교무처장·기획처장·재무처장·음악대학장·조형예술 대학장·무용과 학과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약 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  - ③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 - 2.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3. 교육원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## 문화예술교육원 규정

- 제9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교육과정) ① 본원에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」제18조에서 규정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둔다.
  - ②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연4회(제1학기, 여름학기, 제2학기, 겨울학기)로 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수업일수는 매 학기 14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여름학기, 겨울학기는 7주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  - ④ 학기별 교과목의 개설은 원장의 승인으로 결정하며, 수강등록 인원이 15명 미만 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.
  - 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학점·성적) ① 각 교과목은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고,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, 한 학기동안 14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
  - ② 성적은 시험, 과제물 및 평소의 학습 태도를 참작하여 각 교과목 담당 강사가 평가하다.
- 제12조(수료) ① 교육원 수료자는 개별 교과목별 출석 80% 이상, 성적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.
  - ② 교육원의 교과목을 수료한 자에게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
- 제13조(사업계획 및 예산서) 원장은 교육원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14조(사업보고 및 결산서) 원장은 교육원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·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경비 및 현금출납) 교육원의 경비는 교육원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부 칙(2013. 11. 20. 제정)

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2. 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